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. 9. 18 선고 2020가단20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9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,955,784원을 지급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 등기소 2019. 5. 1. 접수 제24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(무변론 판결)

판사노승욱

별지